

『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주요 정책사업 추진 및 다양한 행정수요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,
- 2018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수요정책 추진에 따른 인력 증원 및 기능 신설, 강화를 통한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 : 1,667명 → 1,697명(+30명)
- 직종별·직급별 정원조정 : 일반직 1,629명 → 1,659명(+30명)
 - 4급 : 10명 → 11명(+1명)
 - 5급 : 82명 → 90명(+8명)
 - 6급 이하 : 1,527명 → 1,549명(+22명)
 - 전문경력관 : 9명 → 8명(△1명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.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

-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주요 정책사업 추진과 다양한 행정수요변화에 부응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조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존 정원의 총수를 1,667명에서 30명이 늘어나는 1,697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기준인건비 의무인력을 반영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,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원 증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됨.